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의간사등) ①(생략)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 공무원 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	제7조(위원회의간사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하고, 사무직원은 감사실소속직원 중에서 구 청장이 임명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
보고서

1996. 9. 13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1996년 9월 9일 마
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:1996년 9월 10일

다. 상정일자:제4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
(’96.9.13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제안설명자:시민봉사실장 최 승 범

가. 개정이유

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, 민원
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원화(인증,
소인분리)되어 있는 창구의 증명민원 업무
처리방법을 일원화(인증, 소인 동시처리)하고
자 함.

나. 주요개정골자

- 동장의 공인 관수자에 관한 사항을 규
정함(안 제3조제4항)
- 구청장의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을
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는 규정을 신설함
(안 제3조제5항)
-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수입증지 요금
계기 사용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제6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동 개정조례안은 '94. 11. 1.부터 시행
된 동사무소 조직체계가 사무장제에서 시민
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계 직제가 신설됨으
로써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
계장이,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각각
관수하도록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따른 불합
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
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치라고
사료되며,

○구청장과 동장의 민원사무용 공인을 수
입증지 요금계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

정하여 인증과 소인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
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으로 민원인의 편의
도 증진될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없음
- 5. 토론요지:없음
- 6. 심사결과: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의 요지:없음
- 8. 기타사항: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호	104
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9. .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, 민원
사무 편의를 도모기 위하여 이원화(인증,
소인 분리)되어 있는 창구의 증명민원 업
무처리방법을 일원화(인증, 소인 동시처리)하
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동장의 공인 관수자에 관한 사항을 규
정함(안 제3조제4항).
- 구청장의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을
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는 규정을 신설함
(안 제3조제5항).
-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수입증지 요금
계기 사용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제6항).

3. 개정근거

○사무관리규정(1996. 6. 29. 대통령제
15063호) 제41조

- 4. 조례(안):별첨
- 5. 예산조치필요성:필요

첨부:1)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
(안) 1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항중 “사무장”을 “시민생활계장”으로, “민원주임”을 “민원봉사계장”으로 하며,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구청장의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한다.

⑥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) ①구청장의 공인은 시민봉사실에,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. ②~③(생 략) ④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<u>사무장이</u> , 민원사무용은 <u>민원주임</u> 이 관수한다. (신 설) (신 설)	제3조(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) ① <u>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)이라 한다</u> …… …… ②~③(현행과 같음) ④…… <u>시민생활계장</u> …… …… <u>민원봉사계장</u> …… ⑤ <u>구청장의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한다.</u> ⑥ <u>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 (안)심사보고서

1996. 9. 12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1996년 8월 20일
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:1996년 8월 21일

다. 상정일자:제4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('96. 9. 12.)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제안설명자:기획예산과장 이 은 규

가. 제정이유

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하는 바, 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.

나. 주요개정골자

○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년 2회로 함(안 제2조)

○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등 주민공개 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
○확정되지 아니한 사업, 정책에 관한 사항등 주민공개에 제한을 둘 수 있음 (안 제5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○동 조례안은 '94. 12. 22.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1회이상 해당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된 바, 주민공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마포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

○안 제4조의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구보, 구계시판,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현재 구보는 매회 60부를 발행하여 구청 각실과 동사무소에만 배포하고 구계시판의 이용주민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며, 다소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정종합홍보지인 「내고장 마포」 소식지나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수정,